

[様式 第4号]

養子縁組申告書
(**입양신고서**)
(年 月 日)

※裏面の作成方法を読んで記入し、選択項目は該当番号に“○”で表示して下さい

区分 구분		養 父 (양부)				養 母 (양모)						
① 養親 양친	姓名 성명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관(한자)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관(한자)				
		漢字 한자		生年月日 생년월일		漢字 한자		生年月日 생년월일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所 주소											
② 養子 양자	姓名 성명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관(한자)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漢字 한자		性別 성별	①男 남 ②女 여	生年月日 생년월일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所 주소											
③ 養子の実父母 (양자의 친생부모)	父 부	姓名 성명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母 모	姓名 성명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④ その他事項 기타사항												
⑤ 養子縁組許可裁判所 입양허가법원						許可日付 허가일자	年 月 日 (년 월 일)					
⑥ 同意者 (동의자)	父 부	姓名 성명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母 모	姓名 성명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親の同意を代える 審判裁判所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법원						審判日付 심판일자	年 月 日 년 월 일				
	親の同意を得られない理由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養子の配偶者 (양자의 배우자)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住民登録番号	-					
⑦ 申告人 신고인	養父(양부)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電話 전화						
						Eメール 이메일						
	養母(양모)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電話 전화						
						Eメール 이메일						
	養子(양자)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電話 전화						
						Eメール 이메일						
	法定代理人 (법정대리인)	① 父母 부모	父 부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電話 전화					
			母 모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Eメール 이메일					
② 後見人 (후견인)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電話 전화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Eメール 이메일							
⑧ 申告人出席の有無 신고인 출석여부												
①養父양부 ②養母양모 ③養子양자 ④法定代理人법정대리인(①父부②母모③後見人후견인)												
⑨ 提出人 제출인		姓名 성명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作成方法 작성방법

※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その国籍を記載する.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住申告番号又は出生年月日)が記載します.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欄及び②欄:法 第25条第2項によって 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載する時 出生年月日の記載を省略できます.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欄:下記の事項や家族関係登録部に記録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養子になる者が 13才未満の場合法定代理人がその者によって養子縁組を承諾しこれを申告する場合その事由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 民法 第869条第3項によって家庭裁判所が法定代理人の承諾なしに養子を許可した場合事由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欄: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だったり非成年後見人が入養したり 養子になる場合家庭裁判所の許可を受けましょう, この場合養子許可裁判や許可日時を記載しましょう.

⑤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⑥欄:同意者欄の記載状況は以下の通りです.

⑥란: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家庭裁判所に入養許可を受けた場合記載しません.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양자になる者が成年の場合でも親の同意を受けなくてはならず, 親が正当な理由なく同意を拒否した場合それにあたる家庭裁判所審判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親の所在がわからないなどの理由で同意を受けられない場合その事由を記載しましょう.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配偶者がいる者が養子になる場合その配偶者の同意が必要です.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欄:養子欄は養子になる者が記名捺印(またはサイン)をする, ただ養子になる者が13才未満の場合に養子欄には記載せず 法定代理人が法定代理人欄の該当番号に‘表〇’に表紙した後記名捺印(またはサイン)します. しかし 民法 第869条第3項によって家庭裁判所が法定代理人の承諾なしに入養許可した場合法定代理人を記載しない.

⑦란: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〇’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欄:提出人(申請人が作成した申請書を申請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だけ記載)の姓名や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を対照]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出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添 附 書 類 첨 부 서 류

※ 下記の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でその内容を電算で確認できる場合、添付を省略します。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入養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と養子縁組関係証明書各1通。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養子に関する家庭裁判所の許可書の謄本や確定証明書各1部
(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であったり、被.成年後見人が入養をしたり、養子になる場合).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入養同意書1部(養子に関する親または配偶者の同意が必要な場合、ただ同意した者が入養申告書の「同意者」欄に姓名と 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て署名または捺印した場合除く).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養子になる者が成年として親の同意書を添付しない場合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親の同意に変わって家庭裁判所の審判書や親の所在が不明などの理由で同意が得られない事を証明する資料
(住民登録抹消、居住不明謄本)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5. 本人が外国人の場合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韓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外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養子縁組証書謄本1部と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1部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養子になる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その子供の本国法が該当身分行為の成立に子供や第三者の承諾や同意などを要件とする場合、その要件を備え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① 一般的な入養申告 일반적인 입양신고
- 申告人が出席した場合 : 申告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申告人欠席、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および申告人全ての身分証明書または署名公証または 印鑑証明書
(申告人の身分証明書なく申告書に申告人が署名した場合、署名公証、申告書に印鑑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郵便提出の場合:すべての申告人の署名公証または印鑑証明書(申告書に署名した場合、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② 報告された養子縁組申告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申請人が出席した場合 : 身分証明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 提出者の身分証明書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郵送提出の場合 : 申告者の身分証明書のコピー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申告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には、7項の2書類のほか、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養子者が13歳未満の養子縁組における法定代理人の出席または身分証明書の提示があるか、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れば申告人の身分証明書提示または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る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入養申告書

[입양신고서]

* 作成方法 (작성방법) :

- 養親(養父/養母)の姓名をハングルと漢字で書く.
양친(양부/양모)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書いてください.
- 養親(養父/養母)の本を漢字で書く.
양친(양부/양모)의 본을 한자로 쓰세요.
- 養親(養父/養母)の出生年月日を書く.
양친(양부/양모)의 출생연월일을 쓰세요.
- 養親(養父/養母)の住民登録番号を書く
양친(양부/양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세요.
- 養親(養父/養母)の登録基準地と住所を書く.
양친(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쓰세요.

② 養子 (양자)

- 養子の姓名をハングルと漢字で書く
양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쓰세요.
- 養子の本を漢字で書く.
양자의 본을 한자로 쓰세요.
- 養子の住民登録番号を書く.
양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세요.
- 養子の性別をチェックする 1)男性2)女性。
양자의 성별에 체크하세요 1)남자 2)여자.
- 養子の出生年月日を書く.
양자의 출생연월일을 쓰세요.
- 養子の登録基準地と住所を書く.
양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쓰세요.

③ 養子の生みの親(父/母)

양자의 친생부모(부/모)

- 産みの親の姓名を書く
(친생부모(부/모)의 성명을 쓰세요)
- 産みの親の登録基準地を書く
(친생부모(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쓰세요)
- 産みの親の住民登録番号を書く
(친생부모(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세요)

④. その他 (기타)

- ⑤ 入養許可裁判所と許可日時を書く
(입양허가법원과 허가일자를 쓰세요)

⑥ 同意者(동의자)

- 親の姓名を書いて、あなたの名前を記入する
(부모의 성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 親の同意を変わる審判裁判所と審判日を書く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과 심판일자를 쓰세요)
- 親の同意を得られない理由を書く
(부모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사유를 쓰세요)
- 配偶者の姓名と住民登録番号を書いて、記名捺印する.
(양자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⑦ 申告人 (신고인)

- 養父と養母の姓名を書いて、記名捺印する.
(양부와 양모의 성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 養父と養母の電話番号とメールアドレスを書く.
(양부와 양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쓰세요)
- 養父と養母の姓名を書いて記名捺印する.
(양자의 성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 両方の電話番号と電子メールアドレスを使用してください。
(양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쓰세요)

法廷代理人 (법정대리인)

- 親の声明を書いて、あなたの名前を記入してください
(부모의 성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 親の電話番号と電子メールアドレスを書き留めてください。
(부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쓰세요)
- 後見人の声明を書いて、あなたの名前を記入してください
(후견인의 성명을 쓰고 기명날인 하세요)

⑧ 申告人出席の有無 신고인 출석여부

- 申告人の出席可否をチェックする.
(신고인 출석여부란에 체크하여 주세요)

⑨ 提出者 (제출자)

- 提出者の姓名と住民登録番号を書く.
(제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세요.)

添付書類 첨부서류

※ 以下1項は、電算情報処理組織によって、その内容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添付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아래 1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入養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的な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と養子縁組関係証明書各1通。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養子縁組のための家庭裁判所の許可書謄本と確定証明書各1部(養子になる人が未成年者であるか、被成年後見人が入養したり、養子になる場合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入養同意書1部(入養に関する親または配偶者の同意が必要な場合ただ同意した人が入養申告書の「同意者」欄に姓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て署名または捺印した時は除く).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養子になる者が成年者として親の同意書を添付していない場合
- 親の同意に変わる家庭裁判所の審判書や親の所在が不明などの理由で同意が得られないことを釈明する資料(例えば住民登録抹消、居住不明謄本)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5. 本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
- 韓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
- 外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養子縁組証書謄本1部と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1部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養子になる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その子供の本国法がその身分行為の成立に子供または第三者の承諾や同意などを要件とする場合、その要件を備え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1-一般的な入養申告
- 申告人が出席する場合:申告人全ての身分証明書
- 申告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および申告人の両方の身分証明書または署名公証または印鑑証明書(申告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申告書に申告人が署名した場合、署名公証、申告書に印鑑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
- 郵便提出の場合:すべての申告人の署名公証または印鑑証明書(申告書に署名した場合、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報告された入養申告 (証書謄本による入養を含む)

- 報告者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
- 郵送提出の場合:申告者の身分証明書のコピー
- ※ 申告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には、7項の2書類のほか、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 養子が13歳未満の養子縁組における法定代理人の出席または身分証明書の提示があるか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れば、申告人の身分証明書提示または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るでしょう。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